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나34153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나341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가단51147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 종결 2016. 3. 8.

판결 선고 2016. 4.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가단51147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세종바인텍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1) 주식회사 세종바인텍(이하, 세종바인텍이라고 한다)은 인쇄, 출판, 제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자동무선철기'(실이나 철사 등으로 매지 않고 접착제만 붙여 책을 제본하는 자동화된 기계장비)의 부속장비인 'PUR 공급장치'(폴리우레탄 소재 접착제를 부착하는 장치)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원고로부터 3억 6,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 세종바인텍과 사이에 이자율 '금융채 6개월물 금리 + 2.5%', 거래기한 2017. 7. 24.까지로 정하여 3억 6,5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특약사항

1) 피고는 2012. 7. 24.경 세종바인텍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을 3억 6,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억 2,85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7. 7.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등)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 이내에서 대출실행하시고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 취득하실 것】

• <당해시설 명세> 품명 : 물러마틴 코로나 자동무선철(모델: 코로나12S 자동무선철) 1 SET(이하, 자동무선철기라고 한다)

2003년 4월

• 상기 설비 구입처 / 제작처 : (주)선경아이앤에스, A / 스위스 물러마티니社

2)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에는, 보증서의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면책범위는 피고 책임분담금액 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2. 7. 18. 세종바인텍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다만 담보목적물은 세종바인텍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점유, 사용, 보존, 관리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7. 27. 위 신용보증서 및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를 담보로 3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보증사고의 발생

세종바인텍은 2013. 3. 12.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적용되는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연 2.77%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세종바인텍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항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가 세종바인텍의 소유가 아니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제3자에 리스한 시설이어서, 원고는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양도담보권의 취득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위 특약의 목적은 보증인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등 참조).

2) 양도담보권의 취득여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당시 세종바인텍의 소유가 아니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가 씨앤북에 리스한 한국캐피탈 소유의 리스설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원고로서는 결국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의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참조).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9 내지 12, 14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세종바인텍은 이 사건 신용보증 및 대출을 받으면서 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주식회사 선경아이앤에스(이하, 선경아이앤에스라고 한다)로부터 구매할 이 사건 PUR 공급장치이고, 이를 주식회사 씨앤북(이하, 씨앤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도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부착하여 일체로 사용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및 대출금액은 세종바인텍이 선경아이엔에스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PUR 공급장치의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2) 원고는 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종바인텍이 선경아이엔에스로부터 이 사건 PUR 공급장치를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2. 6. 25.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와 위 공급에 관하여 선경아이엔에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11호증)를 이 사건 PUR 공급장치를 구매한다는 증빙자료로 제출받았다.

3) 또 원고는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를 11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세종바인텍과 씨앤북 사이의 2012. 5. 20.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와 위 공급에 관하여 씨앤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16호증)를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2. 7. 18. 세종바인텍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매도인 선경아이엔에스에 직접 지급할 것을 위임하는 위임장(갑 제3호증)을 제출받은 후 선경아이엔에스 명의 예금계좌로 3억 6,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5) 원고의 내부규정인 여신업무기준(갑 제17호증)에는, 기계기구 담보취득시 리스물건의 담보취득을 배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의 리스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취득 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 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세종바인텍으로부터 2011년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리스로 지급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의 직원 2명은 2012. 7. 13.경 세종바인텍이 당시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동 45-5 소재 사업장으로 현장실사를 나가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가 설치, 가동 중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리스설비 표찰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7. 25.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감정인은 세종바인텍의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가 설치,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의뢰목록과 대조하는 등 현장조사를 한 후 감정가액을 6억 2,7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정, 즉 ①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PUR 공급장치와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의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그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점, ② 원고는 세종바인텍의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 세종바인텍이 이 사건 무선철기를 점유하며 설치, 가동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점, ③ 원고는 재무제표 검토 및 현장확인, 감정평가 등 기계기구의 담보취득 과정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이 사건 PUR 공급장치의 매도인인 선경아이엔에스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점, ⑤ 원고의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당시 리스설비 표찰 등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가 리스설비임을 의심할 만한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의 매도인 씨앤북에 직접 소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세종바인텍이 원, 피고에 밝힌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는 선경아이엔에스에 지급할 이 사건 PUR 공급장치의 매매대금이었고, 세종바인텍과 씨앤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공급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는 등의 소유권 확인절차는 거쳤으며, 반드시 매매대금 완납이 동산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인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의 매도인이 신용보증서상의 제작처인 선경아이엔에스가 아닌 씨앤북이었던 점, 피고의 직원은 보증사고 발생 후 세종바인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가 한국캐피탈 소유의 리스설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선경아이엔에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폐업한 점, 원고는 기계설비가 설치된 이후에도 확인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종바인텍은 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가 선경아이엔에스로부터 이 사건 PUR 공급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그 매매대금 상당의 대출을 요청하고, 다만 이 사건 PUR 공급장치가 부착된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에는 제작처가 선경아이엔에스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보증사고 발생 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가 리스설비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자동무선철기에 한국캐피탈의 리스설비임을 알리는 표찰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의 영상),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경아이엔에스는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후 1년 2개월이 지난 2013. 9. 30.경 폐업한 점, 또 원고가 양도담보 설정 이후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요구되는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3억 2,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27%¹⁾,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시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은영

판사문현호

1)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관의 내용은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참조).